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정택진 의원)

의 안 번 호	제2641호

발의년월일 : 2021년 8월 20일
공동발의자 : 정택진, 이인락 의원
찬 성 자 : 조진호, 심광식, 윤인숙, 정순희, 박종호, 이재식, 임준희, 공기환 의원 (8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도심의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유아숲체험원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유아숲체험원 관리자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유아숲체험원 운영, 이용신청 및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22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시행령」 제18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

라. 기타

1) 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1. 8. 21. ~ 2021. 8.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원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적용범위) 체험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리자 지정) 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체험원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① 체험원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원의 운영시간은 상시 개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산림교육전문가의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산림교육전문가의 해설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사람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체험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명칭 및 위치

연번	명 칭	위 치	면적 (㎡)	비고
1	신정산 우렁바위 유아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신정동 621 일대)	10,000	
2	용왕산 유아숲체험원	용왕산근린공원 (목동 산199-51 일대)	10,000	
3	지양산 해맞이마을 유아숲체험원	온수도시자연공원 (신월동 331-5 일대)	10,000	
4	매봉산 연의골 유아숲체험원	온수도시자연공원 (신정3동 814 일대)	10,000	
5	신정산 유아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신정동 521)	10,000	
6	갈산 유아숲체험원	갈산근린공원 (신정동 163-55)	10,000	

관계법령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1.>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④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⑥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시행령」

제18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 8. 14.>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